문화창조아카데미 교원 보수, 복무 및 평가지침

제정 2016. 12. 26. 개정 2017. 05. 23.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문화창조아카데미(이하 "아카데미"이라 한다) 운영 규정에서 교원의 보수, 복무 및 평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지침은 아카데미 교원에 한하여 적용된다.
 -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"진흥원" 이라 한다) 내규에 따른다.
- 제3조(전임교원의 보수) ① 전임교원의 보수는 포괄 연봉으로 〈별표 1〉의 기준에 따른다.
 - ② 성과급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〈별표 1〉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.
- 제4조(전임교원의 복무) ① 전임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 위임전결 규칙에 따라 아카데미 원장이 총괄한다.
 - ② 전임교원의 근무처는 아카데미로 한다.
 - ③ 전임교원의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(휴게시간 제외)으로, 크리에이터의 교육시간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 - ④ 전임교원은 아카데미 원장의 승인에 따라 진흥원 유연근무제 운영 규칙에서 정한 근무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.
 - ⑤ 전임교원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은 〈별표2〉를 따른다.
 - ⑥ 국외출장의 경우 진흥원 국외출장심의위원회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- 제5조(전임교원의 평가) ① 진흥원 원장은 전임교원에 대하여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〈별표 3〉에 따라 실시한다. 다만, 임기만료 당해 년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평가절차를 완료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여부를 결정한다.
 - ② 전 항의 평가와 관련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, 운영할 수 있다.
 - ③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제6조(비전임교원의 종류) 비전임교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구분한다.
 - 1. 프로젝트 감독·멘토 : 국내·외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 중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 또는 특수 경력이 있는 자로서 특정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거나 프로젝트 진행을 지원하는 자
 - 2. 초빙교수 : 국내·외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 중에 관련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 또는 특수 경력이 있는 자로 단기간 초빙의 형태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자
- **제7조(비전임교원의 보수)** 비전임교원의 보수는 〈별표 4〉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.
- **제8조(비전임교원의 복무)** 비전임교원의 복무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 한다.
- **제9조(비전임교원의 위촉, 평가)** 비전임교원의 위촉, 평가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진흥원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

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17.5.23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진흥원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〈별표 1〉 전임교원 보수기준

구분	기본연봉	성과급	기타
총감독	10,800만원	매년 기재부 기관평가 및 내부 평가에 따라 지급가능하며 세부	4대보험 여러보사스다 드
전임감독	7,800만원	지급방법은 노사 합의 및 진흥원 보수규정에 따름	4대보험, 연차보상수당 등

- ※ 전임교원의 기본연봉은 포괄연봉으로, 시간외수당 및 직무수당 등 포함
- ※ 4대보험, 건강검진, 미사용 연차수당 등의 지급은 진흥원 내규 준용
- ※ 전임감독의 기본연봉은 <별표 1>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, 본 기본연봉으로는 저명한 인사를 전임감독으로 영입하기 어렵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기본연봉의 30% 범위이내 상향 조정 가능

〈별표 2〉 전임교원 대외활동 기준

구분	기준
외부 출강· 회의 참석	○대가를 받는 외부 강의·회의는 월 3회·6시간 이내로 제한하며, 사전에 아카데미 원장에게 신고해야함. 이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○외부 출강 시 <임직원 행동강령>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에 따라야 함

〈별표 3〉 전임교원 평가기준

ㅇ 평가대상 : 문화창조아카데미 총감독 및 전임감독

ㅇ 해당기간 : 임용일로부터 평가일 직전까지

ㅇ 평가시기 : 고용계약 및 임기만료 1개월 전(매년 말, 매년 1회 실시)

ㅇ 평가기구 :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별도 구성

ㅇ 임용연장 기준 : 평가결과 80점 이상

[정량] 역량평가(50점)			
교육평가 (감독별 강의·프로젝트 등 교육참여 분야별 만족도)			
50점			

[정성] 성과평가(50점)			
아카데미 발전 기여도 (외부홍보, 대외협력 등 위상제고활동)			
50점			

ㅇ 상세 평가요소

- 역량 평가 : 교육만족도
 - · 매 학기말 강의, 프로젝트 등 교육만족도(5분위)를 조사하여 학기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환산
- 성과 평가 : 아카데미 발전기여도(외부홍보, 대외협력 등 위상제고활동)
 - · 해당기간 동안 아카데미 위상제고를 위한 활동(기고문, 외부홍보, 대외협력 등)에 대한 정성적 기여도 평가
 - ※ S(매우 우수, 50점), A(우수, 45점), B(보통, 40점), C(미흡, 35점), D(매우 미흡, 30점)

〈별표 4〉 비전임교원 보수기준 〈개정 2017.5.23.〉

구분	지급기준	대상
특강A ¹⁾	500,000원/시간	ㅇ장관급, 대학총장, 인간문화재, 기업체 대표급 ㅇ기타 상기에 준하는 저명인사 및 해당분야 최고 권위자 (특강 등의 경우)
특강B ²⁾	300,000원/시간	ㅇ특강A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(특강 등의 경우)
일 반A ³⁾	200,000원/시간 ※일 4시간, 월 30시간 한도	ㅇ강의 등 교육 진행 ㅇ선정된 프로젝트 감독 또는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해당분이의 전문지식, 경력을 갖춘 인사
일반B	100,000원/시간 ※일 4시간, 월 30시간 한도	O 자문, 멘토링, 실습 등 교육 진행 O 선정된 프로젝트 감독 또는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해당분이의 전문지식, 경력을 갖춘 인사
보조강사	50,000원/시간 ※일 4시간, 월 30시간 한도	o 비전임교원의 강의를 보조하는 자
초빙교수 (해외)	협상에 의해 결정	ㅇ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력을 갖춘 명망있는 인사

- 1)2) 세미나, 심포지움, 포럼, 컨퍼런스 등 학술행사 강연자, 발표자, 토론자 등은 특강A, 특강B 적용 3)4) 월4회 이상 정규강의 등의 경우 일반A. 일반B 적용
- ※ 특강A, 특강B, 일반A, 일반B는 전임교원 결정
- ※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수성을 고려 문화창조아카데미 원 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함
- ※ 단. 비전임교원이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자인 경우 법에서 명시한 한도금액 이내 지급
- ※ 전임교원 및 본원 임직원이 강사요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강사료 지급 불가